

이사회등 및 사외이사 운영 현황

I. 이사회등의 운영 현황

1) 이사회 산하 위원회

: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2) 이사회 구성 및 의무

1.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2.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부의 사항의 집행결과 및 중요한 업무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3) 이사회 부의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에 관한 사항
 -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2. 주식명의개서 대리인 지정
3.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가. 유상증자
 - 나. 준비금, 잉여금 및 적립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
 - 다.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 라. 자기주식 취득/처분(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
 - 마. 주식의 소각
 - 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식의 처리
 - 사. 배당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이사의 순위 결정
 - 다.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대표자의 선임
 - 라.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의 승인
 - 마. 임원의 타 직업 종사의 승인
 - 바.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사.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5.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의 개정
 - 나. 기본규정의 제/개정 및 폐쇄
6. 결산에 관한 사항
7.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가.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및 수익증권의 취득 및 처분

- (단,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 나. 부동산의 취득, 처분, 건축
 - (단,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 8. 해외법인에 관한 사항
 -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단, 동일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면서, 단일 투자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나. 해외현지법인의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단, 동일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면서, 단일 투자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인 경우는 제외)
- 9. 본사이전에 관한 사항
- 10.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경영상의 업무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결정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2. 기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가.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 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 13. 기타 사규에 의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II. 현 이사회의 구성원

- 이사회 의장 : 최현만
- 선임사외이사 : 안석교

| 성명 (상임/사외)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최초 선임일 [계열회사 포함] | 임기 만료일 | 재임기간 [계열회사 포함] | 당사 보유주식 |
|---------------|----------------|----------------------------------|---------------------|------------|-------------------|------------|
| 최현만 (상임) | 대표이사 | (89~97) 동원증권 (97~99) 미래에셋자산운용 | 1999.12.03 | 2011.05.29 | 10년 6개월 | 127,275주 |
| 김신 (상임) | 경영서비스 부문 대표 | (87~04) (구)굿모닝신한증권 | 2010.05.28 | 2012.05.27 | 1개월 | 0주 |
| 이광섭 (상임) | 상근감사 | (86~08) 금융감독원 | 2008.05.30 | 2012.05.27 | 2년 1개월 | 0주 |
| 안석교 (사외) | 사외이사 | (05~08) 한양대 경제연구소 소장 | 2008.05.30 | 2011.05.37 | 2년 1개월 | 0주 |
| 김정탁 (사외) | 사외이사 | (02~06)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 2010.05.28 | 2012.05.27 | 1개월 | 0주 |

| | | | | | | |
|----------------|------|---------------------------------|------------|------------|----------|-----|
| 노희진 (사외) | 사외이사 | (09~09) 국토해양부 국민투자기금운용위 원 | 2010.05.28 | 2012.05.27 | 1 개월 | 0 주 |
| 신진영 (사외) | 사외이사 | (99~02) 아주대 경영학과 부교수 | 2008.05.30 | 2011.05.27 | 2 년 1 개월 | 0 주 |
| 총 이사 | | | | | | 7 명 |
| 사외이사 | | | | | | 4 명 |
| 사외이사 비율 | | | | | | 57% |

* 당사와의 거래 내역 없음.

Ⅲ.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 및 주요 활동내역

가. 종전 이사회 의 구성원

- 이사회 의장 : 최현만
- 선임사외이사 : 없음

| 성명 (상임/사외)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최초 선임일 [계열회사 포함] | 임기 만료일 | 재임기간 [계열회사 포함] | 당사 보유주식 |
|----------------|----------------|----------------------------------|---------------------|------------|-------------------|------------|
| 최현만 (상임) | 대표이사 | (89~97) 동원증권 (97~99) 미래에셋자산운용 | 1999.12.03 | 2011.05.29 | 10 년 6 개월 | 127,275 주 |
| 김병윤 (상임) | IT 사업부 담당임원 | (88~99) 동원증권 | 2003.05.16 | 2010.05.29 | 7 년 1 개월 | 58,905 주 |
| 이광섭 (상임) | 상근감사 | (86~08) 금융감독원 | 2008.05.30 | 2012.05.27 | 2 년 1 개월 | 0 주 |
| 안석교 (사외) | 사외이사 | (05~08) 한양대 경제연구소 소장 | 2008.05.30 | 2011.05.37 | 2 년 1 개월 | 0 주 |
| 강충식 (사외) | 사외이사 | (07~08)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장 | 2008.05.30 | 2010.05.29 | 2 년 | 0 주 |
| 신진영 (사외) | 사외이사 | (99~02) 아주대 경영학과 부교수 | 2008.05.30 | 2011.05.27 | 2 년 1 개월 | 0 주 |
| 김성진 (사외) | 사외이사 | (05~07)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2009.09.08 | 2011.09.07 | 2 년 1 개월 | 0 주 |
| 총 이사 | | | | | | 7 명 |
| 사외이사 | | | | | | 4 명 |
| 사외이사 비율 | | | | | | 57% |

* 당사와의 거래 내역 없음.

* 김성진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10.03.29 일자로 임기만료 전 사임함.

나. 종전 이사회 의 주요 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1 | 2009.04.16 | 보고안건 - 제 1 호 : 제 10 기 4/4 분기 경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 제 2 호 : 제 10 기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의 건 - 제 4 호 : 제 11 기 경영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제 10 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 제 2 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2 | 2009.05.11 | 보고안건 - 제 1 호 : 제 10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 제 2 호 : 제 10 기 내부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제 1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3 | 2009.07.08 | 보고안건 - 제 1 호 : 제 11 기 1/4 분기 실적 보고의 건 - 제 2 호 : 제 11 기 1/4 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주주명부 폐쇄의 건 - 제 2 호 : 준법감시인 임기 연장의 건 - 제 3 호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기 연장의 건 | 가결 |
| 4 | 2009.08.20 | 심의안건 - 제 1 호 : 제 11 기 1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제 2 호 : PF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 가입의 건 | 가결 |
| 5 | 2009.09.08 | 보고안건 - 제 1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 제 2 호 : 사규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6 | 2009.10.15 | 보고안건 - 제 1 호 : 제 11 기 2/4 분기 실적 보고의 건 - 제 2 호 : 제 11 기 2/4 분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파생결합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의 건 - 제 2 호 : 파생결합증권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7 | 2009.12.01 | 심의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8 | 2010.01.14 | 보고안건 - 제 1 호 : 제 11 기 3/4 분기 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제 2 호 : 제 11 기 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제 2 호 : 파생결합증권 공모 발행한도 증액 승인의 건 - 제 3 호 : 파생결합증권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 보고안건 - 제 1 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보고의 건 - 제 2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 9 | 2010.03.16 | 심의안건 - 제 1 호 :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제 2 호 : 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 제 3 호 : 제 12 기 파생결합증권 발행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의 건 - 제 4 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IV. 이사회내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가. 감사위원회

1) 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이광섭 (2008.05.30) | 1) 설치목적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4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 안석교(위원장) (2008.05.30) | 2) 권한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
| 노희진 (2010.05.28) | | |

2) 종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이광섭 (2008.05.30) | 1) 설치목적 :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4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 안석교(위원장) (2008.05.30) | 2) 권한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
| 김성진 (2009.09.08~2010.03.29) | | |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1 | 2009.04.16 | 보고안건 - 제 1 호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제 2 호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4 호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 제 5 호 : 준법감시인의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 보고의 건 | 보고 |
| | | 심의안건 - 제 1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 | | 의결안건 - 제 1 호 : 감사계획 수립의 건 - 제 2 호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작성, 제출의 건 | 가결 |
| 2 | 2009.05.11 | 보고안건 - 제 1 호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제 2 호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 호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의 건 - 제 5 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p>심의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의 건 - 제 2 호 :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의 건 - 제 3 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제 4 호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제 5 호 : 주주총회 의안 검토의 건 | 가결 |
| 3 | 2009.07.08 | <p>보고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제 2 호 : 종합감사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수시감사결과 보고의 건 - 제 4 호 : 감독기관수검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p>심의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4 | 2009.08.20 | <p>보고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일상감사주요사항보고의건 - 제 2 호 : 종합감사결과보고의건 - 제 3 호 : 수시감사결과보고의건 - 제 4 호 : 감독기관수검결과보고의건 | 보고 |
| | | <p>의결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주주총회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 가결 |
| 5 | 2009.09.08 | <p>의결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 제 2 호 : 감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순위 결정의 건 | 가결 |
| | | <p>심의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6 | 2009.10.15 | <p>보고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일상감사주요사항보고의건 - 제 2 호 : 종합감사결과보고의건 - 제 3 호 : 감독기관수검결과보고의건 | 보고 |
| 7 | 2010.01.14 | <p>보고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제 2 호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3 호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4 호 : 감독기관 수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8 | 2010.03.16 | <p>보고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호 :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의 건 - 제 2 호 :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호 : 수시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제 4 호 : 준법감시인의 연간 검사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의결안건 - 제 1 호 : 감사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 | 심의안건 - 제 1 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1) 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김신(위원장) (2009.12.01) | 1) 설치목적 :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
| 신진영 (2008.05.30) | 2) 권한 1. 리스크관리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2.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 3. 회사 전체의 VaR한도, 포지션한도, Stress Test한도, 손실한도, Credit Exposure한도, 유동성리스크한도의 설정 | |
| 김정탁 (2010.05.29) | 4. Book별 VaR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및 기타 필요한 리스크한도의 설정 5.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최저한도 설정 | |
| 김병윤 (2008.05.30) | 6.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7. 부문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8. 신규업무 및 상품 거래절차 9. 장외파생금융상품, 인수, 투자목적자산 등 각종 거래업무 관련 승인 | 미등기 임원 |
| 조웅기 (2008.05.30) | 10.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승인 및 운용상황 점검 11. 전사적 리스크측정 방법의 적정성 승인 및 점검 12. 위기대응방안의 승인 및 점검 | 미등기 임원 |
| 김재식 (2009.12.01) | 13. 리스크관리담당부서 기능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감독 14. 리스크환경 변화에 따라 리스크관리정책, 절차, 각종 한도, 내부 통제환경 등의 적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 15. 회사의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변경시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와 | 미등기 임원 |
| 나병윤 (2009.12.01) |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토 16.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17. 장외파생금융상품 발행 한도의 배정 18.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미등기 임원 |

2) 종전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 위원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 |
|-------------------------------------|--|-----------|
| 김신(위원장) (2009.12.01) | 1) 설치목적 :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미등기 임원 |
| 신진영 (2008.05.30) | 2) 권한 1. 리스크관리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2.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 3. 회사 전체의 VaR한도, 포지션한도, Stress Test한도, 손실한도, Credit Exposure한도, 유동성리스크한도의 설정 | |
| 강충식 (2008.05.30 / 2010.05.29) | 4. Book별 VaR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및 기타 필요한 리스크한도의 설정 5.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최저한도 설정 | |
| 김병윤 (2008.05.30) | 6.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7. 부문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8. 신규업무 및 상품 거래절차 9. 장외파생금융상품, 인수, 투자목적자산 등 각종 거래업무 관련 승인 | |
| 조웅기 (2009.12.01) | 10.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승인 및 운용상황 점검 11. 전사적 리스크측정 방법의 적정성 승인 및 점검 12. 위기대응방안의 승인 및 점검 | 미등기 임원 |
| 김재식 (2009.12.01) | 13. 리스크관리담당부서 기능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감독 14. 리스크환경 변화에 따라 리스크관리정책, 절차, 각종 한도, 내부 통제환경 등의 적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 15. 회사의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변경시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토 | 미등기 임원 |
| 나병윤 (2009.12.01) | 16.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17. 장외파생금융상품 발행 한도의 배정 18.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미등기 임원 |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1 | 2009.04.16 | 보고안건 - 제 1 호 : 베트남 부동산 임대회사 설립 보고의 건 - 제 2 호 : 리스크소위원회 활동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의결안건 - 제 1 호 : 제 10 기 한도 적정성 검토 및 제 11 기 한도 재배정의 건 | 가결 |
| 2 | 2009.06.18 | 의결안건 - 제 1 호 : 채권본부 RP Book 한도 및 한도관리 프로세스 변경의 건 - 제 2 호 : 신한, 국민은행 Credit Exposure 한도 변경의 건 - 제 3 호 : 업무별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제 4 호 : PEF 투자 Book 신설 및 간접투자, 투자 PI Book 한도변경의 건 | 가결 |

| | | | |
|---|------------|--|----------------------------------|
| 3 | 2009.08.20 | 보고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활동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의결안건 - 제 1 호 : 매입보장약정 Book 한도 및 승인절차 신설의 건 - 제 2 호 : CDS Book 한도 및 승인절차 신설의 건 및 대출 Book 승인절차 변경의 건 - 제 3 호 : 손실한도 변경의 건 - 제 4 호 : 업무별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제 5 호 : 요인별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제 6 호 : 리스크관리 중장기종합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제 7 호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4 | 2009.09.25 | 의결안건 - 제 1 호 : 여의도 Y22 오피스개발 프로젝트 Tower2 매입을 위한 MOU 재검토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연기의 건 | 가결 |
| 5 | 2009.10.13 | 의결안건 - 제 1 호 : 그랜드코리아레저(주)IPO 총액인수의건 | 가결 |
| 6 | 2009.12.01 | 의결안건 - 제 1 호 : Book 한도 신설 및 변경의 건 - 제 2 호 : 리스크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의 건 - 제 3 호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위원 변경 건 | 가결 |
| 7 | 2009.12.24 | 의결안건 - 제 1 호 : Y22 오피스 2 Break Option 행사의 건 | 부결 |
| 8 | 2010.03.16 | 의결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제 2 호 : 제 12 기 전사한도 배정의 건 - 제 3 호 : 제 11 기 한도 적정성 검토 및 제 12 기 한도 재배정의 건 | 가결 |
| 9 | 2010.03.26 | 보고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활동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의결안건 - 제 1 호 :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제 2 호 :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의 건 | 가결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최현만(위원장) (2007.04.10) | 1)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
| 김정탁 (2010.05.30) | 2) 권한 1.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 | |

2) 종전 사외이사후보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최현만(위원장) (2007.04.10) | 1)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권한 1.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 | 위원장 |
| 안석교 (2010.04.15 / 2010.05.30) | | |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1 | 2009.05.11 |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9 | 2009.08.20 |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라. 보상위원회

1) 현 보상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성명 (현 보직선임일/퇴임일)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김신(위원장) (2010.05.29) | 1) 설치목적 :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하는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권한 1.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 1.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 제도의 설계,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2.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는지 등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 3. 성과보상체계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매년 점검하는 연차보상점검의 실시 및 감독당국 및 주주들에 대한 그 결과의 제출 4. 이 규정을 적용할 성과보상 대상자(경영자 및 특정직원)의 결정 5. 그 밖에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 |
| 안석교 (2010.05.29) | | |
| 노희진 (2010.05.29) | | |

2) 종전 보상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

- 현 보상위원회는 2010.03.16 일자로 신규 설치되었음.

V.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회계연도 | 사외이사 총수 | 신규 선임 이사 수 | 퇴임 사외이사 수 | 신임 사외이사 비율 |
|------|---------|-----------------------|-----------------------|------------|
| 2010 | 4명 | 2명 (김정탁, 노희진) | 1명 (강충식) | 50% |
| 2009 | 4명 | 2명 (김성진, 장병구) | 3명 (김성진, 장병구, 민태섭) | 25% |
| 2008 | 4명 | 3명 (신진영, 강충식, 안석교) | 3명 (임내현, 임희순, 전중열) | 75% |
| 2007 | 4명 | 2명 (민태섭, 임내현) | - | 50% |
| 2006 | 2명 | 2명 (임희순, 전중열) | 1명 (류길현) | 100% |
| | | | 연평균 사외이사 수 | 3.6명 |
| | | | 최근 5년간 신규선임 사외이사 총수 | 10명 |

* 장병구 사외이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미취임됨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 비율 및 최근 5년간 신규선임 사외이사 총수 계산 시 제외함.

VI.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계획

가. 2009 회계연도 활동내역

| 사외 이사명 | 이사회 | | 이사회내위원회 | | | | | | | | 활동시간 | | | |
|-----------|-----|----|------------|------------|--------------|------------|-----------------|----|------------|----|------|----|---|---|
| | | | 경영위원회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감사위원회 | | | | | |
|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개최 | 참여 | 목표 | 실적 | | |
| 안석교 | 9 | 9 | 참석대상 아님 | | 참석대상 아님 | | | | | 8 | 8 | - | - | |
| 강충식 | 9 | 9 | | 9 | 9 | 참석대상 아님 | | | 참석대상 아님 | | | - | - | |
| 김성진 | 5 | 5 | | 참석대상 아님 | | | | | 4 | 4 | | | - | - |
| 민태섭 | 4 | 4 | | | | | 2 | 2 | 4 | 4 | | | - | - |
| 신진영 | 9 | 9 | | 9 | 9 | 참석대상 아님 | | | 참석대상 아님 | | | | | - |

* 민태섭 사외이사는 2009.09.08일자로 임기완료.

* 김성진 사외이사는 2009.09.08일자로 임기시작.

나. 2010년도 이사회가 정한 활동 계획

| 구 분 | 개최회수 | 비 고 |
|-----|------|---------------|
| 이사회 | 4 회 | 정기이사회(분기 1 회) |
| | 필요시 | 수시이사회 |

VII.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내역 및 계획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은 현재 수립중임.

VIII. 사외이사의 교육·연수내역 및 계획

가. 2009 회계연도 사외이사별 교육, 연수내역

| 사외이사 성명 | 비 고 |
|---------------------|-----|
| 가. 교육, 연수 실시 내역 | - |
| 1)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2)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 |
|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나.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 - |

나. 2010 회계연도 교육, 연수계획

- 현재 계획 수립중임.

IX. 2009 회계연도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 사외이사명 |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 | 기부한 금융투자 회사등 | 지원내역 | |
|---------|-------------|----------|-----------------|-------|--------|
| | 법인등의 명칭 | 사외이사와 관계 | | 과거1년간 | 과거 5년간 |
| 해당사항 없음 | | | | | |

VII. 사외이사 지원부서 현황

- 전략기획본부 기획팀

비고 :

1. 'I. 1. 이사회 개요 및 권한'은 이사회 구성 소위원회 내역 등, 상법 제 393 조, 정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이사회운영내규 등에 따른 이사회 권한 등 전반적으로 약술
2. 'I. 2. 현 이사회 구성원' 및 'I. 3. 가. 종전 이사회 구성원' 중 주요경력은 학력 및 약력을 연도 순으로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해당 이사의 해당 금융투자회사등(계열회사 포함)과의 주요거래 관계, 보유주식 수 등 주요 사항을 적시
3. 'I. 3. 나. 종전 이사회 주요 활동내역' 및 'I. 4. 가. 2) 종전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은 종전 1 년간을 대상으로 의안내용에는 의안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 가결여부에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4. 'I. 4. 이사회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은 회사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설치되었거나 되어있는 위원회를 기재하고 구성란에는 "사외이사 ○○, 상근이사 ○○"으로 기재, 비교란에는 변동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
5. 'II.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은 이 기준 시행 이후에 대해 최근 연도 순으로 작성하고, 비교란에는 해당연도의 대표이사, 선임사외이사 등을 적시
6. 'III.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계획' 및 'V. 사외이사의 교육·연수내역 및 계획' 중 '1'의 경우 종전 1 년간을 기준으로 '2'의 경우 향후 1 년간을 기준으로 작성
7. 'VI. ()년도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 내역'의 작성요령은 '[별표 2] V.' 참조
8. 각 항목 중 예외공시(제 27 조)를 통해 이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하거나 운영된 사항에 대해선 그 사실과 이유(제 27 조에 의해 공시한 내용)를 각 항목의 말미에 기재